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발급하는 현행 중기복무제대군인증과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명칭을 변경·통합하고,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·운영, 재발급,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지원 대상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

(안 제2조의2 조문제목 개정, 제1항 및 제2항 신설)

-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발급하는 현행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명칭을 변경·통합하도록 함.(안 제2조의2제1항)
-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·운영, 재발급,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관리 근거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

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의
규정을 준용하도록 함.(안 제2조의2제2항 신설)

마. 공공시설 이용(안 제32조제2항)

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
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,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
인에게 제시하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기복무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등의 발급에 관한 경
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기복무제대
군인증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이 영
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결정하고,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중·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발급한다”를 “결정한다”로 한다.

제2조의2의 제목 “(지원 대상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)”을 “(법 적용 대상 제대군인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.(이하 “국가보훈등록증”이라 한다)

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·재발급 및 진위 확인,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, 국가보훈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2조제2항 중 “제2조제3항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증”을 “제2조의2

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제1호나목 중 “중기복무제대군인증과 장기복무제대군인증”
을 “국가보훈등록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기복무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등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이 영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지원신청 절차 등) ①·② (생략)	제2조(지원신청 절차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군복무 기간, 법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고,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중·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<u>중기복무제대군인증 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발급한다.</u>	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결정한다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2조의2(<u>지원 대상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</u>) <신설>	제2조의2(<u>법 적용 대상 제대군인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</u>)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.(이하 “국가보훈등록증”이라 한다)
<신설>	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·재발급 및 진위 확인, 발급대상자 본인 확

①・②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유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제32조(공공시설의 이용) ① (생략)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. ③ (생략) 제34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대군인의 주소지(제7호에 따른 권한의 경우 학교 소재지를 말한다)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	인, 국가보훈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③・④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 ④ 제3항----- ----- -----. 제32조(공공시설의 이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제34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-	--

장 또는 보훈지청장(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)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, 제6호, 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, 제7호, 제8호, 제12호, 제12호의2 및 제13호 중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결정과 법 적용대상자로의 결정, 제15호 및 제16호의 권한에 한정한다. 1. 법 제4조 및 이 영 제2조·제2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. (생략) 나. <u>중기복무제대군인증과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의 발급</u> 다. (생략) 2. ~ 16. (생략)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국가보훈등록증</u>----- ----- 다. (현행과 같음) 2. ~ 16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42